

제 호

☐ 배출가스저감장치  
☐ 저공해엔진

반납확인증명서

반납 대상  
자동차  
또는  
건설기계

소유자 성명

연락처(전화번호)
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

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

차대번호

장치 부착(개조) 연월일

소유자 주소

반납 사유  
([ ]에 √표시)

[ ]폐차 또는 폐기 [ ]수출 [ ]사고·재해·도난,  
[ ]천연가스버스 대차 [ ]저공해차 대차 [ ]기타 ( )

반납 내용  
([ ]에 √표시)

반납 일시

반납 장소

반납 장치 제작사명

반납 방법

[ ] 현물 [ ] 금전

반납 장치명 및 부품종류:

[ ] 매연여과 장치(DPF) 및 [ ] 자기진단 장치  
[ ] 산화촉매장치(DOC)  
[ ] 저공해엔진([ ] 베이퍼라이저/인젝터, [ ] 믹서/쓰로틀바디,  
[ ] 촉매, [ ] 엔진제어장치(ECU/ECM))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 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 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직인